

##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 실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도입도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법정책 수립에 국민과 일선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들은 이날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률사무종사자 1000명 등 2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80~90개 가량의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심급별, 사건별, 재판 단계별 전관예우 실태를 묻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와 함께 30~4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와 관련한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다.



〈사법발전위 3차 회의〉

사법발전위는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분석한 다음 올 10월 말 내지 11월께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위원들은 또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발전위는 전문위원 연구반에서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성격과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한 다음 구체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신문 인용)

## 법무매거진

### 관사 10명중 7명 ‘미확정 판결문, 인터넷 공개 반대’

관사들이 ‘미확정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반대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16~27일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결과에서 공개됐다. 전국 관사 2983명 중 1117명(37.5%)이 설문에 응답했다.

관사들은 ‘미확정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복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사사건에 대해선 70.0%, 형사사건에 대해선 78.3%가 반대했다. 또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7.5%가 반대했다.

현재 하급심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승인을 얻으면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고, 소부 판결은 일부만 열람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찬반 여부만 물어 관사들이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성폭력 사건은 피해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기업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하급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개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하급심 판결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인용)

## 법무매거진

### 로펌들, IT-스타트업 찾아 ‘관교 상륙’

– 태평양, 분사무소 업무시작… 세종도 5월말 사무실 열기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진출 잇달아 –

법무법인 태평양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분사무소를 새로 열었다.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고객으로 잡겠다며 대형 로펌이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판교신도시에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11일 법무부로부터 분(分)사무소 설립을 인가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분사무소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현대백화점에 있으며 규모는 115m<sup>2</sup>다. 분사무소 오픈을 기념해 29일 판교신도시에 ‘미국 특허분쟁 최근 동향, 실무 및 사례연구’ 세미나를 연다.

태평양이 판교신도시에 대형 로펌 중에서 처음으로 진출한 것은 IT 기업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다. 판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굴지의 IT 대기업의 본사가 몰려 있다. 엔씨소프트 등 게임 대기업들도 여럿 있다. 이들 기업의 법률자문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변호사들을 분사무소에 배치해 IT·게임 기업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IT 스타트업의 초기 법률자문에 응해 줌으로써 나중에 법률분쟁이 발생할 때 이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여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로펌이 스타트업의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맺어두면 향후 이 기업들이 성장했을 때 로펌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또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의미도 커서 대형 로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판교 분사무소장은 이병기 변호사(50·사법연수원 24기)가 맡았다. 민인기(44) 박준용 변호사(45)가 분사무소에 상주하고 기업법무, 금융, 노동 등 10여 명의 전문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본사와 판교 분사무소를 오가며 일한다. 본사와 분사무소는 화상회의, 원격시스템을 통해 교류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에 있는 IT·게임 기업들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조언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외에 법무법인 세종도 5월 말 판교신도시에 분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결은 2014년 이곳에 분사무소를 열었다. 로펌들이 잇달아 판교신도시에 분사무소를 내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IT기업 법률시장을 차지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구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네이버 관련 법률조언을 끊기도 했다.

(동아일보 인용)

## 법무매거진

# 대한변협, 대법관 천거 또 ‘공개’... ‘비공개 원칙’ 사문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8월 퇴임을 앞둔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공개’ 천거했다. 또 다시 ‘비공개 원칙’을 어긴 셈이다. 만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개 천거된 인사 중에 대법관이 나온다면 사실상 ‘비공개 천거 원칙’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규칙’ 제6조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을 위한 ‘천거’는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피천거인’이 대법관 후보추천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법원 공고도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기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 1. '대법원 규칙' 어기는 변협

대법원이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개인·단체가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밀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후보를 천거하기도 한다.

변협 등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대법관 후보를 '공개' 천거했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공개 천거된 인사들은 심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공개 천거 대신 비공개 천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협만은 '비공개 천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변협은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를 '공개' 천거했다. 변협은 당시 '비공개' 규정을 어기고 천거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두 변호사를 후보로 천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변협에 의해 천거된 두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거르는 절차가 없는 '의견제출 대상 후보군'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실제 후보추천위 심사대상에선 강재현 변호사가 제외됐다. 김선수 변호사는 변협 외에 다른 천거인에 의한 천거가 중복돼 심사대상자엔 포함됐다.

당시 대법원 후보추천위는 강재현 변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공개' 천거임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변협에 '공개 천거가 피천거인에 불이익으로 작용한단 점'을 경고한 셈이다.

### 2. 변협 '공개 천거'한 조재연, 대법관 임명 '혼란'

지난해엔 사실상 최초로 변협의 공개 천거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이변이 발생하며 '비공개 천거' 원칙에 혼란이 생겼다. 변협이 지난해 5월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변호사를 공개 천거했는데, 이중 조재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제청돼 대법관이 된 것이다.

외형만 봐선 '비공개' 규정을 어긴 변협의 천거가 배제되지 않은 셈이 됐다. 변협은 지난 14일 9명의 후보를 천거하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조재연 대법관을 천거 성공사례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조 대법관의 경우는 변협 천거로만 대법관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협 외에 다른 곳에서도 중복 천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는 '공개' 천거가 있었더라도 '비공개' 중복 천거가 있는 인사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변협 등에 의해 '공개' 천거된 인사를 무조건 배제하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후보자에서 탈락시킬 의도로 오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 추천권을 넓게 보장한다는 의미로 시작한 천거제도가 일부 단체나 개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3. 판사 3명 포함 9명 천거한 변협

만약 이번에도 변협에 의해 공개 천거된 9명 가운데 제청 대상후보자가 나온다면 '비공개 천거'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개 천거에 아무런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공개 천거된 법조인이 비공개로 중복 천거돼 후보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난해처럼 후보추천위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외부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한편 올해 변협이 현직 법원장을 포함해 중견 판사를 3명이나 공개 천거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자신들의 천거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협 또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등의 천거도 원칙상 일반 개인들의 천거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천거된 후보들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모두 후보군에 포함된다. 다만 천거돼도 본인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단에서 빠진다.

#### 4. 국민 누구나 '대법관 천거' 할 수 있어

변협·시민단체 등은 '천거'라는 표현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천'으로 바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천거'와 '추천'은 다르다.

변협 등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추천'이 아니라 '천거'로 표현해야 한다. '추천권'은 대법원 후보추천위에 있는 만큼 이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천거'는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의 전 단계인 셈이다.

대법관 후보 천거의 경우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대법관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에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경력 20년 이상의 45세 이상 법조인을 천거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할 수 있다. 자천은 불가능 하지만 타천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관 후보를 천거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서식에 맞춰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가 '천거서' 제출기간이었다. 곧 있을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제출'도 마찬가지다. 간단한 의견서 서식을 기간 내에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인용)

## 법무매거진

#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특강



법조인 동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고권력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소수의견이 많은데, 소수의견은 민주사회의 장점인 다양성을 반영한다.”며 ‘소수자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은 어린이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묻지만, 더욱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매거진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법조인 동정

### I. 주요 개선 방안

#### 1.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1)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

-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검사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예정

##### (2) 검사 복무평정 정비

-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복무평정 고지 제도’ 도입)
-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정 항목을 개선하는 등 검사 복무평정 제도 정비

#### 《 현행 복무평정 제도 개요 》

-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검사장’으로 약칭)를 제외한 전 검사를 상대로 매년 2회(6월 및 12월) 실시
- 평정 항목은 ①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② 치밀성·성실성, ③ 추진력·적극성, ④ 판단력·기획력, ⑤ 보고·의사소통 능력, ⑥ 인화협조·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⑦ 자기통제·자기계발 능력, ⑧ 잠재역량
- 복무평정 결과는 비공개(검사복무평정규칙 § 8①)



<지난 5월 16일(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2.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1) 평검사 경향교류 강화

- 경향교류 원칙(“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을 강화하여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지방청의 활성화 도모
- 법무부·대검 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

### (2) 인사 시기 법제화, 인사 일정 예고제 지속 실시

- 상·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를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 제고
- ’18. 2. 인사 시 최초 시행한 바 있는 ‘검사 인사 일정 예고제’ 지속 실시

## 3.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
  - ※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검사장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다만, (가칭)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여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

#### 4. 인사 검증 강화

##### (1)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강화

-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
-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 예정

##### (2) 검사적격심사 강화 등 검사 검증 강화

-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추진

#### 《 검찰청법 개정안(16.6.정부안 제출, 법사위 계류) 》

- ① 검사 부적격 기준을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
  -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 ㉢ 검사로서 품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 ② 심사주기 단축
  - 임관 후 매 7년이던 것을 ‘임관 2년째 및 그 후 매 5년’으로 단축

- 비위 검사가 제때 걸리지 않고 책임있는 보직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일반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

#### 5. 형사부 강화 및 우대

##### (1) 형사부 검사 우대

-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 조성, 형사부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 강화 추진

《공인전문검사 등 제도 개요》

- 공인전문검사 제도
  - 전문분야를 피해자보호, 경제, 성 관련 범죄, 증권·금융 등 47개로 구분하고, 블랙벨트(1급), 블루벨트(2급)로 인증 '18. 5. 현재 블랙벨트 4명, 블루벨트 135명
-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
  - 대검에 형사사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6명의 전문연구관을 두고 일선 수사 및 전문지식 DB화 지원, 해당 분야 교육 지원 등 정책 업무를 담당
  - 현재 담당 분야는 ① 안전사고·교통·수사지휘, ② 식품·의약·환경, ③ 경제·부동산, ④ 특허·지식재산권, ⑤ 조세·명예훼손, ⑥ 여성·아동
- 중점검찰청
  - 일선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현재 11개청)하고, 전문성 갖춘 우수자원 배치, 필요 시 근속기간 1년 연장을 허용
  - 서울동부지검(사이버), 서울남부지검(금융), 서울북부지검(건설),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대전지검(특허), 부산지검(해양), 울산지검(산업안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 설치, 경륜 있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배치하여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
- 전국 차치지청 이상에 배치되어 약식명령청구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직무대리(검찰 직 4, 5급)를 부치지청까지 확대 배치하여 검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지원

6.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② 대체 가능성, ③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 적극 검토
  - ※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 파견(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 중

II. 추진 일정

2018년 중 관련 법령 제·개정 완료

※ 『검사인사규정』, 『검찰 공용차량규정』 제정, 『검찰청법』, 『검사복무평정규칙』 등 개정 필요

## 법무매거진

법원 주류에 반기 든 판사,  
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 있어야,,,



법조인 동정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돈키호테’라고 자신을 표현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촬영 장소는 부산시 연제구의 부산지법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차례 집에서 가까운 부산지법에서 근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지난해 9월)한 뒤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요직들을 차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두 모임 회장이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득세’하면서 일종의 적폐 청산 작업도 벌어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규명하겠다고며 판사들이 위원회를 조직해 법원행정처 간부 컴퓨터(PC)를 강제로 열었다. 그때 ‘영장 없는 조사’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원 주류에 반기를 들었다. 최근엔 청와대가 판사 징계 국민청원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자 법원 상층부에 3권분립 원칙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도대체 왜 ‘대세’를 거스르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를 만나봤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가 취지를 물어왔다. “왜 비주류의 길을 자원해서 걷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저 같은 판사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다음날 바로 KTX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갔다. 김태규(51) 울산지법 부장판사와의 만남(지난 10일)은 이렇게 이뤄졌다.

**질의 :** 이력이 특이하다. 사법연수원에서 바로 법원으로 간 대부분의 판사와 달리 변호사로 시작해 나중에 판사가 됐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응답 :**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28기)에 갔을 때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았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판·검사를 할 엄두를 못 냈다. 연수원 나와서 1년 정도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고향인 울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4년 정도 운영했다. 빚도 다 갚고 돈도 조금 모았다. 그랬더니 ‘인생의 보람’ 같은 게 떠올랐다. 공부 욕심이 생겨 미국 인디애나주립대로 유학을 가 법학석사(LLM) 과정을 밟았다. 귀국 직후 때마침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을 모집해 채용됐다. 그리고 1년 뒤쯤 법원에서 경력 법관 채용(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것)을 하길래 지원했다.”

**질의 :** 군 법무관 출신이 아니다. 대학 재학 중에 군에 다녀왔다.

**응답 :** “대학 85학번(연세대 법학과)이다. 당시는 고시 공부가 죄악시되던 때였다. 하숙집에서 만난 한 대학 선배는 ‘판·검사가 되겠다는 것은 일본 강점기에 형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학년 1학기 마치고 단기사병으로 18개월 복무했다. 그 하숙집 선배는 비서관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들어갔다.”

**질의 :** 출생지는 경주로 돼 있고, 중·고교는 울산에서 나왔다. 자신을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중 어느 쪽으로 여기나. 이른바 ‘TK 정서’가 법원 내부 비관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물어본다.

**응답 :** “경주에서 서너 살 때 울산으로 왔으니 굳이 따지자면 PK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특별히 지역색을 의식하며 살아 본 적은 없지만 ‘경상도 사람’이 갖는 특색의 일부를 공유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질의 :** 처음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1월 2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 법원행정처 판사 PC 강제 조사에 대해 ‘영장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왜 그랬나.

**응답 :** “나는 그 전까지 코트넷 게시판에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아무리 개인 소유가 아닌 법원 소유의 물건이라고 해도 사적 정보가 들어 있는 판사 PC를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배라는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었다. 영장주의는 수백 년

간 다듬어져 온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구체적인 의혹 사항과 소명자료가 있다면 검찰로 넘겨 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도록 해야 하는 일이었다. 나는 원칙을 말했을 뿐이다. 당시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전 간부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질의 :** 첫 글을 올리고 나서 약 3주 뒤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제 조사를 강행한 판사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다시 썼다. 그 조사에서는 일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이 나온 게 사실이다. 아직도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생각하나.

**응답 :** “그것이 블랙리스트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인사 등의 불이익이 입증돼야 한다. 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불이익을 블랙리스트의 필요조건으로 설명했다. 그 문건의 내용이 법관 인사에 반영됐다는 증거는 없지 않은가. 당시 조사에서 발견된 ‘동향 보고’ 문건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비난이든, 처벌이든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된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원을 통제하는 엄청난 음모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 :** 지난달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 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응답 :** “한 표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 홀로 들관에 선 심정이었다. 법원이 특정 학회 중심으로 조직화, 집단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독주를 막고 싶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가 세력이 되고, 세력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은 특히 법원에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 :** 결국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판사(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게 완패를 당했는데, 후회하지는 않나.

**응답 :** “93대 23이었다. 아내조차 나 말고는 나를 선택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스물세 표나 받았다.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질의 :** 의장 선거 날 김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말을 했다. 표결 직전 일이었다.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

**응답 :** “대법원장 인사말 뒤에 후보들 발언 시간이 있었다. 대법원장은 이미 떠난 상황이었지만 내 발언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쓴소리를 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대법원장이 투표가 끝난 뒤에 덕담했다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다.”

질의 : 지난 4일과 8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판사(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과면 국민청원 처리 결과를 청와대가 법원에 통보한 일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냥 알려줬을 뿐”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응답 : “법원 게시판에 어떤 행정부처의 잘못을 주장하는 글이 오르고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고 가정하자. 그때 법원이 해당 부처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법원이 행정부 일을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는가.”

질의 : 정계로 뛰어들 욕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응답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판사가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한 일로 여긴다.”

질의 : 계속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하나.

응답 : “나는 어차피 판사가 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고법 부장판사나 법원장 같은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세상 바뀐 줄 모르는 돈키호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난 법과 법원, 판사직을 좋아한다. 이것이 내가 법원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중앙일보 인용)